

#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827
----------	---------

제안일자 : 2020. 09. 08  
제안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공동주택 자문단 자문위원으로 포함하려는 ‘주민전문가’의 자격 요건 중 주민대표로 활동한 단지 규모와 관련하여, 서울시 내 단지규모별 분포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규모 기준을 확대함.

## 2.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14조의2제3항제6호 중 ‘2,0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’을 ‘1,0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’으로 수정함.

##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4조의2제3항제6호 본문 중 ‘2,000세대 이상’을 ‘1,000세대 이상’으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14조의2(서울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설치·운영 등) ① ~ ② (생략) ③ (생략) 1. ~ 5.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	제14조의2(서울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설치·운영 등) ① ~ ② (생략) ③ (생략) 1. ~ 5. (생략) <u>6. 2,0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로 4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고, 그 가운데 2년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. 이 경우 같은 공동주택에서 활동한 경력에 한정한다.</u>	제14조의2(서울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설치·운영 등) ① ~ ② (생략) ③ (생략) 1. ~ 5. (생략) <u>6. 1,0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로 4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고, 그 가운데 2년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. 이 경우 같은 공동주택에서 활동한 경력에 한정한다.</u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1,0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로 4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고, 그 가운데 2년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. 이 경우 같은 공동주택에서 활동한 경력에 한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수   정   안
제14조의2(서울시 공동주택관리 전문 문가 자문단 설치·운영 등) ① ~ ② (생 략) ③ (생 략) 1. ~ 5. (생 략) <u>〈신 설〉</u>	제14조의2(서울시 공동주택관리 전문 가 자문단 설치·운영 등) ① ~ ② (생 략) ③ (생 략) 1. ~ 5. (생 략) 6. <u>1,0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            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로 4년           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고, 그 가운            데 2년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의 회            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.            이 경우 같은 공동주택에서 활동한            경력에 한정한다.</u>